

[별지 제59호의2서식] (규칙 제136조의2제1항 관련) <신설 2010.6.28>

추천서

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1. 추천자명단

거류국명	재외위원회명	성명	생년월일	성별	국외거소	비고 (전화번호)

2. 위에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.

붙임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○부.

년 월 일

추천인 ○ ○ 당 인
 대 표 자 ○ ○ ○ 인
 ○ ○ ○ 공 관 의 장 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 : 1. “국외거소”란에는 거류국의 거소를 적습니다.
- 2.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 ‘2.’를 생략합니다.